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안교육의 중립성 확보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0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안교육의 중립성 확보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19.
3. 회 부 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안교육의 중립성 확보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3(대안교육의 중립성)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검토의견

-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²⁾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2025년 9월 기준 총 267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재학생 수는 총 11,772명임.

<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10	7	8	13	11	2	1	7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6	11	12	7	9	267

자료: 교육부, '25.9. 기준

<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초중(통합)	중·고(통합)	초중·고(통합)	기타	합계
학생 수(명)	2,819	1,820	1,797	616	1,235	2,796	689	11,772

자료: 교육부, '24.7. 기준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조사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함.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5. 4.)	267개 등록 (’25. 9.)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수업료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자율로 정함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보호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⁵⁾, 최근 일부 대안교육기관에 대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대안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임.

< 「교육기본법」 제6조 >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중립성 준수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이나 교육감·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학부모·학생도 편향적 정치·이념 교육을 문제 삼을 때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규범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 군사훈련...교회 대안학교 탈출하려니 손가락 던진 부목사('25.9.1. 한국일보)

- 다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함.

「대한민국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고⁷⁾, 「교육기본법」은 이에 따라 교육이 본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여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⁸⁾.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제도의 일환으로서 「교육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바,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는 이미 명확히 부과되어 있는 상황임.

유사하게 「초·중등교육법」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초·중·고 등의 중립성 준수 의무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학습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7)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한 대안교육의 본연의 목적과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필요

- 다만, 개정안의 ‘대안교육은 대안교육의 본래의 목적 및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라는 표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주체인 대안교육기관을 주어로 하고, 이 법에서 대안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육의 중립성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제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안교육기관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바, 대안교육기관도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4